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등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07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6. 6. 22.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는 데 그치고 있어 아동·청소년인 이용자를 자살·자해 조장, 약물 오·남용, 성착취, 과의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Ⅲ. 검토의견

1.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에게 문자·음성 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1항).
- 이용자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제1호)
-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제2호)
-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방법·시간 등 제한(제3호)
- 해당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내용 등 정보 제공(제4호)
- 자살·자해, 마약류 오용·남용, 성적 착취 또는 학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대한 신고 및 신고 내역 확인(제5호)
- 제5호에 따른 위험 신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험 제거 등 대응(제6호)
- 그 밖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제7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 서의 <u>아동 보호</u>)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u>만 14세 미만의 아동</u> 에 게 <u>문자·음성</u> 을 이용하여 사람 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 리하는 <u>시스템</u> 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u>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 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44조의8(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등 에서의 <u>아동·청소년 보호</u>) ① -- ----- <u>아동 · 청소년</u> (「아동·청소년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아동·청소년</u> 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u>음성 등</u> ----- ----- ---- <u>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발 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 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u> ----- ----- ----- <u>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u> -----.
<신 설>	1. <u>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u>
<신 설>	2. <u>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u>
<신 설>	3. <u>이용자인 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방법·시간 등의 제한</u>
<신 설>	4. <u>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내용 등 정보의 제공</u> 5. <u>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이 자살·자해,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의 오용·남용, 성적 착취 또는 학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신고 내역의 확인</u>
<u><신설></u>	6. <u>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험 제거 등 대응</u>
<u><신설></u>	7. <u>그 밖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u><신설></u>	② <u>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고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사용 또한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인공지능 챗봇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0대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청소년 2,674명)의 대화형·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률은 67.6%로, 응답자의 2/3 이상이 대화형·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¹⁾.
- 이처럼, 청소년의 인공지능 챗봇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나 과몰입을 유발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직접 인공지능 챗봇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²⁾.
 - 미국 연방의회는 2025년 「사용자 연령 확인 및 책임 있는 대화 지침 법안³⁾」을 통해 연령 확인, 인공지능 챗봇 고지 등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입법을 추진 중임⁴⁾.
 - 캐나다 의회는 2026년 「안전한 소셜 미디어 법안⁵⁾」을 통해 ‘챗봇

1)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025. 12. 31., 119p.

2)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AI 챗봇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2026. 7. 20.

3) Guidelines for User Age-verification and Responsible Dialogue Act

4) 개별 주정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는 「인공지능 컴패니언 챗봇 규제법」이 2026년부터 시행 중이고, 워싱턴주 뉴욕주, 버지니아 주 등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 중임.

서비스’를 SNS와 별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해 안전설계, 지원기관 연결 체계 구축 등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 중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44조의8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챗봇과 같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만 14세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⁶⁾.

- 개정안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하고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청소년(19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44조의8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사람과의 대화 기능

5) Safe Social Media Act, Bill C-34)

6)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는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가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에게도 안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우려가 있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음성·문자를 통한 대화 기능 없이 그림이나 영상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해당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대화 기능이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이용제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 챗봇 사용 확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44조의8제1항제2호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인 이용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친권자·후견인이 모두 없어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이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44조의8제1항제4호는 이용자 요청에 따른 대화 정보 제공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주체도 아동·청소년인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넷째, 안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가 법 시행 이전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어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안 제44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 및 본인 여부의 확인 조치와 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조치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정수용

- 최근 AI 활용 아동·청소년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바 AI 시스템을 포함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고, AI의 가장 활발한 소비층이면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주요 피해가 집중되는 청소년층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 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수용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반 이용자의 요청에도 조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안 제44조의8제1항제4호의 ‘이용자’를 ‘이용자인 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 단순히 ‘신고’라고 하면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안 제44조의8제1항제5호를 ‘신고 절차 마련’과 같이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 각 호의 의무를 서비스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태료, 시정명령 등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규정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보장이라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나, 안 제44조의8제1항제4호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을
일률적·상시적으로 적용하므로 청소년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됨.

-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그 표현상 안 제44조의8제1항제4호의 ‘이용자’ 범위를 ‘아동·청소년’으
로 제한하는 등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신중검토

○ 다음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전면적 체계 정비가 진행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예측가
능성 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비(非)대화형 서비스도 포함되어 청소년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서비스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음.
- 모든 이용자에 대한 연령·본인 확인 의무 부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른 규제와 중복될 수 있고, 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어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화 정보 제공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권과 중복되고, 대화 정보의 사후적인 제공은 개인정보 체계와 정합성 문제 및 이용자 본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자살·자해 조장 정보는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동법 제19조제1항)와 위반 시 형사처벌(동법 제25조) 등과, 마약류 관련 정보는 「마약류관리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체계와 중복됨.

4)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 ‘게시물’ 또는 ‘매체물’을 전제로 한 기존 규율 체계로 충분히 대응이 어려우므로 개정안과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보호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아동보호 책임 부과와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하는 입법동향을 고려하여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11개주에서 AI 챗봇의 정보 공개 및 위험 예방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 대상 연령 확인 및 미성년자 접근 통제, 콘텐츠 안전성 확보, 전문서비스 제한 등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 캐나다는 아동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 논의를 본격 추진하여 챗봇서비스와 SNS를 별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안전설계 등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되,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제도도 도입하는 논의를 진행 중임.

문 의 처
02)6788-5228